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5 신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안 제23조제4항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1 개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분야를 한정된 문구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①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비스 신청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발달장애인등과 상담, 소득·재정상황 확인 등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위탁자(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재산을 공단

에 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익자(이전된 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3. 이전할 재산의 내역 및 이전 방법에 관한 사항

4. 이전된 재산(이하 “위탁 재산”이라 한다)의 배분 주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및 우체국예금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서비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나. 위탁 재산에 대한 소송 및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다.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2. 공단이 서비스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채무 또는 손해에 상당한 비용

⑤ 위탁자와 공단은 합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서비스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수익자가 사망한 때

2. 제5항에 따라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때

3. 위탁 재산 전부가 없어진 후 90일이 경과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시·도지사가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를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발달장애인	이 름	생년월일	성별 []남성 []여성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이 름	장애인과의 관계
인적사항	주 소(혹은 소속)	[]부모 []후견인 []시설종사자 []기타()
		전화번호

상담을 위한 기본정보	상담 희망 장소	상담 희망 일시
	위탁 예정 재산내역	
	서비스를 통한 희망 목표 []생활비 관리 []채무상환 []저축 []기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자가 발달장애인 본인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본 2. 신청자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인 경우 :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 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u>법 제33조제2항</u> 에 따 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 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 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 원계획 수립을 의의하여야 한 다.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 의 방법 및 절차) ① ----- ----- ----- ----- <u>법 제33조제2항 및 제3</u> <u>항</u>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u>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u> <u>의 이용절차 등)</u> ① 발달장애인 <u>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u> <u>인등”이라 한다)가 법 제29조의</u> <u>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u> <u>(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라 한</u> <u>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u> <u>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장</u>

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비스 신청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발달장애인등과 상담, 소득·재정상황 확인 등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위탁자(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재산을 공단에 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익자(이전된 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3. 이전할 재산의 내역 및 이전 방법에 관한 사항

4. 이전된 재산(이하 “위탁 재산”이라 한다)의 배분 주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및 우체국예금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서비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나. 위탁 재산에 대한 소송 및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다.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
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
용

2. 공단이 서비스 사무의 처리
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
은 경우 그 채무 또는 손해에
상당한 비용

⑤ 위탁자와 공단은 합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
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서비스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수익자가 사망한 때

2. 제5항에 따라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때

3. 위탁 재산 전부가 없어진 후
90일이 경과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 운영에

	<u>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① ~ ③ (생략)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가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u>	④ <u>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u> ----- ----- ----- ----- ----- -----.